

[양형위원회 제131차 회의 경과 및 결과의 요지]

1. 양형위원회 제131차 회의 내역

- 일시: 2024. 4. 29. 15:30
- 장소: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주요 안건
 - 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
 - ②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
 - ③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

2.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전문위원 회의 업무지원
-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양형기준 관보 게재
- 제9기 후반기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 양형자료 조사 및 결과분석
-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3.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61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4.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

가. 설정 범위

1)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한 쟁점

가) 기존 설정 대상 범죄 포함 여부(적극)

나) 신규 설정 대상 범죄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공갈 제외)(제15조의2 제1항), 상습범(제15조의2 제3항) 포함 여부(적극)

(2)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제8조 제1항 제1호), 상습범(제9조), 가중처벌(제11조 제1항) 포함 여부(적극)

다) 설정 제외 범죄

- (1) 편의시설 부정이용(형법 제348조의2) 포함 여부(소극)
- (2) 부당이득(형법 제349조) 포함 여부(소극)
- (3)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미수(제15조의2 제2항) 포함 여부(소극)
- (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허위 피해구제 신청(제16조 제1호), 제3조 제4항에 따른 허위 지급정지 요청(제16조 제2호) 포함 여부(소극)
- (5)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허위 피해구제 신청(제16조 제3호), 제7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이의제기(제16조 제4호) 포함 여부(소극)
- (6)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 행위 알선·유인·권유·광고(제8조 제1항 제2호) 포함 여부(소극)
- (7)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 미수(제10조) 포함 여부(소극)
- (8)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 등 제공·누설·목적 외 사용 범죄(제14조) 포함 여부(소극)

라) 심의 결과

- 각 쟁점에 대하여 전문위원단 의견과 동일하게 결정함

나. 유형 분류

1)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한 쟁점

- 가)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를 별도로 유형분류할지 여부(소극)

나) 심의 결과

- 전문위원단 의견과 동일하게 결정함

2)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쟁점

- 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상습범을 별도로 유형분류할지 여부(소극)

- 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를 별도로 유형분류할지 여부(소극)

다) 심의 결과

- 별도 유형 분류하지 않고, 현행 양형기준의 유형 분류를 유지하기로 함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십의

가. 설정 범위

1)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한 쟁점

가) 기존 설정 대상 범죄 포함 여부(적극)

나) 신규 설정 대상 범죄

-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계좌 정보 제공, 보관, 전달, 유통) 포함 여부(적극)

다) 설정 제외 범죄

-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권한 없이 전자금융기반시설 접근 등), 제2호(전자금융기반시설 데이터 파괴 등), 제3호(일시에 대량신호를 보내는 등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 오류 또는 장애), 제4호(업무상 지득한 전자금융거래정보 타인에게 제공 등) / 제49조 제3항(전자화폐 위조·변조 등) / 제49조 제5항 제6호(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록), 제7호(다른 가맹점 명의로 전자화폐 거래), 제8호(전자화폐 거래 대행), 제9호(가맹점 아닌 자가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 거래) 포함 여부(소극)
-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1호(접근매체 위조·변조), 제2호(위조·변조 접근매체 사용 등), 제3호(분실·도난 접근매체 사용 등) 포함 여부(소극)
- (3)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4호(부정한 방법 등으로 접근매체 획득 및 이용), 제5호(강제로 빼앗거나 공갈 등으로 접근매체 사용 등) 포함 여부(소극)
- (4)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5호(미등록 전자금융법) 포함 여부(소극)
- (5)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6호의2, 제9호의2(2024. 9. 15. 시행) 포함 여부(소극)
- (6)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0호(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

로 전자금융거래정보 열람, 제공) 포함 여부(소극)

- (7)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6항 제3호(전자화폐 등 거래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제공 거절 등), 제4호(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 부담케 하는 행위), 제5호(가맹점 이름을 타인에게 대여), 제6호(미인가 합병·해산·폐업 등) 포함 여부(소극)

라) 심의 결과

- 각 쟁점에 대하여 전문위원단 의견과 동일하게 결정함

나. 유형 분류

1)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한 쟁점

- 가) 기존 유형 분류를 유지할지 여부(적극)

나) 심의 결과

- 전문위원단 의견과 동일하게 결정함

6. 향후 일정

가. 제132차 양형위원 전체회의

- ▣ 일시 : 2024. 6. 17.(월) 오후
- ▣ 안건 :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